생명의 땅 전남
Full of Life, Jeonnam

전라남도 도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2015-31호 2015년 7월 13일 (월)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 Namdo
우)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 061-286-2073

목 차

◈ 조 례

전라남도 조례 제393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 7. 7.)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7.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37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060명”을 “4,2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792명”을 “1,80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127명”을 “2,26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72명”을 “8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 구역청
총 계	4,223	-					
정무직계	1	-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636	-					
1급	1						1
2급 ~ 3급	2	1	1				
3급	11	7		1		2	1
3급 ~ 4급	2	2					
4급	68	42	4	8		13	1
5급 이하 소계	1,528	-					
전문경력관 소계	24	-					
별정직 계	23	-					
1급 상당	1	1					
2급 상당	-						
3급 상당	-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14	-					
연구직 계	207	-					
연구관	30			26		4	
연구사	177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7			7			
지도사	17	-					
소방공무원 계	2,263	-					
소방정	17	4		13			
소방령 이하 소계	2,246	-					
교육공무원 계	69	-					
총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나 전임강사	53			53			
조교	15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로 책정된 정원은 별정직 정원에 포함

전라남도의회 제2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5. 7. 7.)에서 의결된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 7. 13

전라남도지사 이낙연

전라남도 조례 제3938호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8호 중 “기업도시, 규제개혁”을 “기업도시”로 한다.

제6조 중 “기획조정실, 경제과학국, 안전행정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를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경제과학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농림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소방본부”로 한다.

제7조제6호 중 “자치법규 관리”를 “자치법규 관리, 규제개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총괄, 재난정보, 재난상황실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비상계획, 원자력, 민생특별사법경찰에 관한 사항
4.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생활안전관리, 안전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농축산식품국)”을 “(농림축산식품국)”으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건설방재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보안, 총무, 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 고시·훈련 및 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5. 국민운동에 관한 사항
6. 통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새마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 및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9. 시군 행정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10.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분권 및 지방이양에 관한 사항
13. 인권 업무에 관한 사항
14.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15. 도립대학교 운영지원 등 학교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진흥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17. 남도학숙 및 전남학숙 운영관리 · 지원에 관한 사항
18. 전남인재육성재단 운영관리 등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제12호 중 “119 안전종합상황실”을 “종합상황실”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교류, 투자유치 관련 정보수집”을 “교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별표 1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전라남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전라남도 지역개발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일반사업(배후)단지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국장,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⑦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전라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⑩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⑪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전라남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도민안전실장”으로 한다.
⑬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⑯ 전라남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설방재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⑰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2조 중 “행정

지원과장” 을 “사무국장” 으로 한다.

⑱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농축산식품국장, 동부지역본부장, 건설방재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동부지역본부장“으로 한다.

⑲ 전라남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 건설방재국장” 을 “도민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안전총괄과장” 을 “사회재난과장” 으로 한다.

⑳ 전라남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㉑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㉒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㉓ 전라남도 명예도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㉔ 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㉕ 전라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 을 “보건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㉖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을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㉗ 전라남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방재국장” 을 “관광문화체육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㉘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농축산식품국장” 을 “농림축산식품국장” 으로 한다.

㉙ 전라남도 일제강점하 피해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을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으로 한다.

㉚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농축산식품국장” 을 “농림축산식품국장” 으로 한다.

㉛ 전라남도 약용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㉜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㉝ 전라남도 남도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조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㉞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㉟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농축산식품국장”을 “농림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㊱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라목 중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가목 중 “건설방재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가목 중 “농축산식품국”을 “농림축산식품국”으로 한다.
㊲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별표 1]

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6조 관련)

소방서명	위 치	관 할 구 역
목포소방서	목포시 삼향천로 110	목포시일원, 신안군일원
여수소방서	여수시 망마로 20	여수시일원
순천소방서	순천시 서면 삼산로 281	순천시일원, 구례군일원
나주소방서	나주시 예향로 4201	나주시일원
광양소방서	광양시 중마중앙로 109	광양시일원
담양소방서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232	담양군일원, 곡성군일원, 장성군일원
보성소방서	보성군 벌교읍 녹색로 5247	보성군일원, 고흥군일원
화순소방서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750	화순군일원
강진소방서	강진군 군동면 중앙로 223	장흥군일원, 강진군일원
해남소방서	해남군 해남군 교육청길 82	해남군일원, 완도군일원, 진도군일원
영암소방서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192	영암군일원
무안소방서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387	무안군일원
영광소방서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 3508	영광군일원, 함평군일원